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7609 |
|----------|-------|

발의연월일 : 2026. 3. 19.

발 의 자 : 송언석 · 이종욱 · 서지영
박성훈 · 최수진 · 곽규택
박준태 · 김미애 · 이달희
김 건 · 성일종 · 유상범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관련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이 2027년 1월 1일부터 연기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을 이미 ‘상품’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존재함.

아울러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과세 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향후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실무적·행정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제21조제1항제27호 삭제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중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제27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2항 중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을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3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제12호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과목 중 “타목”을 “카목”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중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를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제11항까지 및 제16항에”를 “제11항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164조의4를 삭제한다.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제2호 중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과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2항·제16항·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을 “제70조제2항, 제84조제4호, 제119조제12호과목,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22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p> <p>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 7. (생략)</p> <p>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p> <p>가.·나. (생략)</p> <p>다. <u>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 소득</u></p> <p>라.·마. (생략)</p> <p>9. (생략)</p> <p>④ ~ ⑥ (생략)</p> <p>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p> <p>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p> | <p>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p> <p>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제21조제2항</u>----- -----</p> <p>라.·마. (현행과 같음)</p> <p>9.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p> <p>제21조(기타소득) ① ----- ----- ----- -----</p> |

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26. (생략)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② ~ ⑤ (생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2. (생략)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

1. ~ 26. (현행과 같음)

<삭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

1.·2. (현행과 같음)

<삭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삭 제>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생략)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 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생략)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 ⑥ (생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삭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
-----.

③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

1. 2. (현행과 같음)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4. (생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11. (생략)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카. (생략)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

<삭제>

4.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가. ~ 카. (현행과 같음)

<삭제>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 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② ~ ⑥ (생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1. 2. (현행과 같음)

<삭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가. (생략)

나. 제119조제12호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

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

가. (현행과 같음)

<삭제>

다. 가목-----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② ~ ⑪ (생략)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그 국
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
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⑬ ~ ⑮ (생략)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
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
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
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
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
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
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

② ~ ⑪ (현행과 같음)

⑫ -----제11항까지에---

⑬ ~ ⑮ (현행과 같음)

<삭제>

다.

⑰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16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16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삭 제>

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 3. (생략)
4.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가
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

제3호-----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2항·제16항·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4. (생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

-

1. (현행과 같음)

2. 제70조제2항, 제84조제4호, 제119조제12호파목,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제12항의 개정규정-----

3.·4.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삭제>

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제119조제12호다목 및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 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제16항·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삭 제>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호, 같은 조 제5항·제6항·제7항 및 제16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생략)

4.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제177조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현행과 같음)

<삭제>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제>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제>